

「팩스를 통한 거래 지시 약정서」개정 대비표

■ 시행일자: 2019년04월29일

■ 등재위치: Home>고객센터>자료실>상품공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2조 면책</p> <p>(1) 본인은 본인의 명의 하에 발급하여 귀 행이 수령한 신청서가 위조되었거나 권한이 없는 신청서라 할지라도 본 약정서 조건에 따라 구속을 받기로 동의합니다. <u>귀행은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, 본인은 귀 행이 본 약정서의 조건에 의거하여 지시 처리함으로 인해 귀 행과 귀 행의 직원이 발생시켰거나 입은 손실, 이의, 조치, 소송, 요구, 손해, 및 비용(그에 따른 법률비용 포함)(통칭 '손실')에 대하여, 또는 본 약정서 제3조에서 정한 수권확인자의 통지확인서를 귀 행이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, 그리고 본 약정서 제4조에서 정한 수권자 또는 수권확인자의 변경, 추가 또는 취소사실을 귀 행에 즉시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, 귀 행과 귀 행의 직원이 발생시켰거나 입은 손실에 대해 면책하고 이에 대해 청구 즉시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합니다. 단, <u>귀행의 중대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은 예외로 합니다.</u></u></p> <p>(2) <u>(삭제)</u></p>	<p>제12조 면책</p> <p>본 약정에 의한 지시 이행과 관련하여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